

희망저축계좌 II

□ 지원내용(3년만기)

○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
♣ 지원예시

▷ 본인저축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= 월 20만원 ⇒ **3년간 약 720만원 + 이자 추가지원금***

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

- (내일키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(내일키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(기타장려금)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
□ 가입 및 유지 기준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
(단위 : 원/월)

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
기준 중위소득	2,077,892	3,456,155	4,434,816	5,400,964	6,330,688	7,227,981	8,107,515
가입기준 (소득상한)*	1,038,946	1,728,077	2,217,408	2,700,482	3,165,344	3,613,991	4,053,758
유지기준 (소득상한)**	4,434,816	4,434,816	4,434,816	5,400,964	6,330,688	7,227,981	8,107,515

* 가입기준: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하

** 유지기준: 가구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% 이하

□ 해지요건

구 분		해지사유	지급액
지급해지	만기	- 3년간 통장유지 + 교육(3년간 총 10시간) +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완료 시	•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
	중도	-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초과 + 교육 (3년간 총 10시간)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시 - 생계·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	

구 분		해지사유	지급액
환수해지	만기	-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	• 본인적립금과 이자 (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)
	중도	-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-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-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- 압류, 가압류 시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-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- 생계·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	

□ 유의사항

-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.
 -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~현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,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.
-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 기간 중 총 6개월간 ‘적립중지’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,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용인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